

	교육과정 정책·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	규정 번호	4-1-24
		제정 일자	2011. 9. 28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과정정책·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1.08.20.개정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정책과 다음 각 호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연구 및 평가한 사항 <2014.2.27. 개정>
4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임하며 각 부서의 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11.16., 2021.08.20., 2023.3.30., 2024.2.22., 2024.3.20.>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보직처장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2014.2.27., 2019.11.14. 개정>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(연구비)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소위원회) 각 학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

<2013.12.10. 신설>

제9조(학과 교육과정위원회) ①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목표 설정, 교육과정 편성, 평가, 개선사항을 수행한다. <2013.12.10. 신설>

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학과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반드시 산업체 인사를 전체위원 1/3이상으로 구성한다. <2015.11.16. 개정>
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에 준해서 시행한다.

<2013.12.10. 신설>

③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는 교육과정 정책·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.

<2013.12.10. 신설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신안산대학교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3조(구성)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